

제목: Is Democracy Possible Here 제4장

저자: 로널드 드워킨

교안 작성자: 이한

제4장 Taxes and Legitimacy

1절 세금과 정부지출

4 부시의 세금감축은 빈부격차를 훨씬 더 심화시켰다. 하나의 범조항-기업 배당금을 소득세 면제 해주는 조항-으로부터 생긴 혜택의 반 이상이 전체 인구 중 상위 5%로 흘러들어갔다.

5 부시정부의 세금감축으로 재정적자만 발생했고 2001년 이후의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주로 부자에게만 돌아갔다. 중위소득가구의 소득은 떨어졌으며 미국 가구 평균소득은 2004년 이 되었을 때, 2.3%가 떨어졌다.

6 세금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은 경제 예측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지기를 원한다.

7 보수주의자들은 심지어 현재의 세율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아니라에서 이미 지나치게 빈약한 것이 되어 버렸으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더 줄인다는 것은 그러한 법들을 더욱 더 빈약한 것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나는 세금수준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세금수준과 정부의 정당성 사이의 연결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의견불일치의 심층을 다루고 체계화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9 세금에 관한 토론은 특징적으로 날카롭고 과장된 것이었다. 거기에는 구조가 없었다. 단지 슬로건을 주고 받을 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난한 자를 빨아먹는다고 말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남의 돈을 자기 것인양 쓰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어느 쪽도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는 세금 수준을 규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절 정치적 정당성과 평등한 배려

11 모든 인간의 평등한 본질적 중요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보이는 것과 동일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목표와 취향, 그리고 책임에 따라 행동한다. 동일한 정도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다. 즉 개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의 척도로서는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는 배려를 동등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12 그러나, 국가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는 매우 다른 문제다. 정부는 그 통치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등한 배려를 보여야만 한다. 우리가 선출하는 정부는 어마어마한 강제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시민들이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 obligation로서 우리의 집단적 요구를 다루어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개인도 다른 개인들에게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13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행사할 권한이 있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한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바로 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라는 정치철학의 가장 오래된 문제다.

14 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검증을 거쳐야 할까?

제안1 : 완벽하게 정의로운 정부만이 정당성을 가진다.

비판: 이는 지나치게 강한 요구조건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어떠한 정부도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안2: 많은 정치철학자들은 정당성이 동의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들은 헌법이 피통치자에게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국가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요구조건 또한 너무 강하다.

비판1: 모든 정치공동체에서는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비판2: 철학자들은 이 이론을 다양한 우화로 희석시켜야만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국민이 그 영토 내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정부의 권위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국민만이 실제로 이민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은 보다 약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제안2-2: 국민들이 어떤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권위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정당하다. 이상적인 조건이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등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어느 경우든 가설적 동의는 동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이론에 대한 수정은 이론을 원래의 의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고치는 것이다.

15 그렇다면 어떤 검증을 사용해야 하는가? 2장에서 내가 그었던 정치적 권리와 인권 간의 구분을 상기해 보라. 동일한 구분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다. 나는 두 질문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차원의 인간 존엄 원리에 대한 최선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질문이고, 정의에 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와는 다른, 보다 해석적인 것이다. 정부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동에 대한 제약조건으로서 두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두 원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부 자신의 이해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함을 보여주는가?

16 설득력 있는 정당성 이론은 실제상의 또는 가설적인 만장일치를 전제하지 않고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즉 시민들이 태어나는 즉시 또는 태어나고서 좀 시일이 지나면 당연히, 그들의 의무 obligation을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받아들였는가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법을 존중할 의무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전제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대신, 공동체의 정부가 구성원의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한,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아야만 한다.

ex) 나를 이등 시민으로 다루는 공동체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공화국은 흑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성 있는 권위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전쟁 전의 미국 주 정부들은, 오직 재산으로만 다루었던 노예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

17 정당성 있는 정부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의 구성원들을 단지 배려의 척도로만 대우할 것이 아니라 평등한 배려를 가지고 대우해야 한다. 즉 정부의 정책이 미치게 되는 각 시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정치적 정당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18 Q)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안착되었음을 보여주는가? 즉, 단지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권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에 대한 배려 자체를 지독히 감소시킨 것인가? 그 질문은 물론 정부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를 보임으로써 답할 수 없다.

어떤 논평가들은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부자를 이롭게 하는 과세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박약한 근거 하에서 언젠가 자신도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부의 과세정책이 정당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데에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의 다수가 정부가 필요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도, 어느 견해가 실제로 올바른지는 검토해야만 한다.

19 정치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려면 어떤 과세정책을 정부가 취해야 할까?

3절 자유방임주의와 작은 정부

21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국민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많은 변수들의 함수이다. 이 변수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힘, 과거의 선택, 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힘과 욕구의 보유 여부 등이 있다. 이런 변수들을 <개인적인 경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변수가 그의 실제 자원과 기회로 마침내 현실화되는 것은 정치적 변수에도 의존한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법과 정책'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정치적 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22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가진 자원이 오직 그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정부의 선택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평등한 배려라는 도전을 피해갈 수 없다. 자원은 두 가지 모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Q) 어떠한 정치 질서를 선택해야 시민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

23 반론: 정부는 시민들의 부모가 아니며 성인인 시민들은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야 하며 정부는, 세금 체계나 다른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 없이 자신들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것을 자유로이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충고는 내가 방금 전개했던 논지를 무시한다: 즉, 정부는 시민을 단순히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정부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향을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24 재반론: 분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각 정책의 독립적 근거만 고려하자.

비판: 1) 모든 정책 결정은 예산과 분배 결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자동적으로 분배적 결정인 셈이다. ex) 교육과 보건의 얼마만큼 돈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군사 장비에 얼마나 쓸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경제 계급들이 가질 권한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 없이 이들 문제에 답할 수 있을 것인가?

2) 군사력에 얼마나 쓸 것인지는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지, 누구에게 걷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걷어야 공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질문(Q)에 대한 중립적인 자유방임주의적 답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극보수주의자들조차 인두세, 누진세, 비례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에 직면한다.

26 그러므로 자유방임 국가는 환상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이미 현존하는 정치질서를 그 중

립성 가정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대전제로 삼고 그 힘을 받는 것은 놓아두고 그 협상의 결과를 건드리지 말자는 식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유로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국가는 그러한 거래의 결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도 인민을 평등한 배려로 다루는 정치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당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러한 답변은 현재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질서가 그러하다고 단순히 가정할 뿐이다.

27 A기획: 자유방임주의도 평등한 결과일 수 있다는 논변: 예를 들어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가장 번영하게 하는 정치질서를 목표로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은 매우 큰 정도의 자원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부와 행복은 공동체 전체의 부와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때 동등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28 비판: 그러나 집합적 목표에 대한 호소는 그 즉시 평등한 배려에 대한 더 심층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정부는 집합적인 목표를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는 정부는 그와는 다른 전반적인 목표를 택했을 지도 모른다. B기획: 예를 들어, 집합적인 번영과 행복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정도를 제한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의 부가 명기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목표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B 기획이 아니라 A 기획을 택하는 것이 평등 배려냐 아니냐의 질문은 답해져야만 한다. 만약 A기획에 따라 결과하는 불평등이 너무 크다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선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었다고 정당화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다. 여러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새로운 집을 사는 선택을 하는데, 각 침실의 면적의 합이 가장 넓은 집을 사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아이가 쓸 침실이 비참할 정도로 어두침침하고 참을 수 없을만큼 좁다면 그 가족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4절 개인적 책무

29 이제까지의 나의 논변은 매우 급진적인 결론을 추천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려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운을 가졌든 동일한 자원을 가지는 정치질서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결론. 그러나 이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ppr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30 예를 들어, 공동체의 모든 자원을 일년마다 모아서 평등하게 다시 재분배해주는 급진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어떤 선택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31 이보다 덜 급진적인 평등주의 프로그램은 이만큼 완전히는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개인적 책무의 원리를 타협시킨다. 예를 들어 많은 경탄을 받아 온 존 롤즈의 정의의 이론-최소 수혜자 극대화 원칙-을 고려해 보자.

32 롤즈의 이론은 선택과 무관한 사태로 자원을 적게 소유한 자와 선택의 결과로 그렇게 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롤즈의 기획 역시 개인적 선택과 개인적 운명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책무의 원리가 요구하는 바에 어긋나는 것이다.

33 롤즈는 정의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구성하여 포괄적인 교리에 대한 확신이 그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비판: 만약에 그러한 제약을 받아들인다면 공공의 삶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논변을 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사회의 명백한 정치적 확신은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해결책: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존엄과 개인적 책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윤리적 원리를 규명하고 우리의 갈등하는 정치적 원리가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확신으로 보다 확고히 근거지우는 일을 시도해야 한다.

결론 - 우리는 개인적 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평등주의적인 기획도 거부해야만 한다.

34 따라서 인간존엄의 두 원리를 수용하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것도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 정의로운 세금 이론은 그러므로 최선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평등한 배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책무의 진정한 결과에 대한 관념 역시 포함해야 하며, 이 두 요구조건을 동일한 구조에서 충족시켜야만 한다.

36 세금 이론 없이도 평등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는 직업을 할당하고 임금을 결정하며, 주택보건과 같은 다른 혜택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대략 평등한 삶의 수준을 누리게 할 수 있다.

37 그러나 집단적 결정에 의해 그토록 심하게 관리되는 사회주의 사회는 ppr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5절 사후적 평등과 사전적 평등

38 과세의 구체적인 설계는 너무 많은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 이론에 대해서 논하겠다. 정의의 문제 뿐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므로 세금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낮은 세금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하겠다. 여기서는 세금은 불평등을 줄이는 여러가지 용처에 쓰인다고 가정하고 누가 무엇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만 논의하겠다. 즉 세입-재정지출 등식이 아니라 과세측면만 논하겠다.

39 개인책무의 원리는 주된 경제조직의 형태가 자유시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삶에서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40 그러나 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시장은 불평등을 생산한다. 그리고 운과 능력은 덜 불평등한 분배 질서를 달성하는 전적으로 다른 정치적 질서에서는 완전히 달리 선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등한 배려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이 문제(운과 능력의 배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이 선거구민의 다수-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에게 매우 인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가 평등한 배려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은 바로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세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보다 강제적인 경제보다는 훨씬 덜 가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권 구조에 대한 변형, 제한 논점의 결여- 보론에서 다음시간에 다룸)

41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자원이, 선택이 수반하는 가치와 비용에 따라 정해지고, 부모와 재능과 같은 유전상의 운을 포함한 운에 의해 정해지지 않을 때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이 이상은 완벽하게 현실화될 수는 없지만, 최적으로 정의로운 세금 프로그램과 정당성을 지닌 재분배적 세금 프로그램을 규명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 받아들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삶의 상이한 시점에서 사람들을 평등하

게 만들 수 있고, 이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원용한 구분이 유용할 것이다: 사전적 평등과 사후적 평등의 구분.

42 ① 사후적 평등: 운이나 재능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오직 선택에만 영향 받는다. 재능이 없어서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거나, 병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었다거나 할 때, 사후적 평등을 수용하는 정부는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이러한 장애나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지위로 복구시키려는 정책을 편다.

② 사전적 평등: 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이와는 달리,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운명의 부침 이전에 미리 평등한 지위에 놓아두고자 한다. 여기서 '미리'라는 것은 좋은 또는 나쁜 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이 발생하기 이전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 낮은 생산성을 지닌 재능이나 나쁜 운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살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있다.

43 일견 사후적 평등이 평등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44 그러나 정치적 이상으로서 사후적 평등은 결점을 갖고 있다. ① 투자 운을 완전히 조정하게 되면 경제 투자 제도 전체를 파괴하게 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빠지게 만들 것이고 ppr을 위배할 것이다. 우리 삶의 결정 중 대부분은 투자적 결정이다. ex) 다른 커리어가 아니라 특정한 직역의 활동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일의 결과는 다양한 우연적 요소에 영향 받는다. 만약 요리사 길을 걸은 사람들이 무조건 똑같이 만드는 것은 선택을 위한 고유한 책임을 감소시킨다. ② 공동체에는 다른 일에 쓸 자원이 남는 게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장애인을 위해 장비와 개인 보조자를 공급해 주는데 얼마를 더 쓰든 장애인은 사고를 당하기 이전보다는 더 나빠진 것이며(자원의 측면에서)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 언제나 더욱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는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의 실제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맡겨 놓았다더라면 부상을 당하기 전에 최고의 보험상품을 사느라 모든 돈을 써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확률을 전제로, 값비싼 보험을 사기 위해서 삶의 모든 측면을 타협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46 반론: 우리는 오직 합당한 수준의 사후적 평등만을 주장할 분이다. 투자 기구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고, 사고의 희생자에게 보상하느라 공동체의 핵심자원의 대부분을 써버리지 않는 수준까지만 보상하는 것이다.

반론에 대한 비판: 세금 논증에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후적 평등의 합리적 수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으므로, 세금을 낮출 것을 원하는 목소리도 언제나 동일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47 우리는 온전히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최적의 세금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일관된 최소한도의 관대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적 평등보다 덜 관대한 사전적 평등이 평등한 배려의 해석으로 옹호가능하다면, 사전적 평등을 최소한의 목표에 대한 진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사전적 평등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온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로 명백히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ex) 만약 일부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심각한 사고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면 그러한 위험을 덜 불평등하게 만드는 작업 현장 안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적 평등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금을 통해 가장 잘 교정되는 불평등에 집중하여 미리 여러 형태의 보험을 삼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불평

등에 논의를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작업 안전 프로그램 실시 자체도 보험의 구입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속도를 낮춤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일단 보험을 통해서 사고 후 자원의 이전이라는 중심개념을 탐구한 후,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변용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된다.)

6절 정의의 이미지

48 두 개의 거대한 이미지가 경제적 정의 이론을 지배해 왔다. 그 중 하나는 부자에서 빈자에게로 재분배를 하게 하는 상상적인 사회계약의 은유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재원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 공동출자의 은유다. 사회계약의 이미지는 정치철학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해 왔다. ex1) 토마스 홉스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묘사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상상하였다. 즉, 이들은 기업처럼 자기 고유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는다. ex2) 존 롤즈는 계약장치를 사용해서 이와는 매우 상이한 효과를 내게 하였다. 그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기만의 구별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상상하였다. 이렇게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람들 간의 협동을 위한 공정한 규칙을 구성할 수 있는 가상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롤즈의 계약은 부의 사후적인 분배를 고정시킨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체 내의 최소 수혜자들의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규칙에 동의하게 된다.

49 보험 은유는 계약 은유보다는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 훨씬 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정치에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해 왔다. 영국에서의 페이비언 운동, 미국에서 루즈벨트의 뉴딜, 전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사회안전망, 빈민구제와 같은 재분배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질병, 실업, 다른 나쁜 운과 같은 사고에 대비한 광범위한 보험체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는 세금은 보험료로 이해되었고, 사람들이 아프거나 실업 상태에서 받는 혜택은 보험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옹호하기 위해, 보험 이미지와 연관된 사전적 평등의 장점을 주장하였다.

50 ① 계약 은유는, 통치권 내 모든 인민의 가상적이고 추정적인 동의에서 사회정의의 기반을 발견하려는 오래된 실패로 끝난 꿈에 의해 고취된 것이다. ② 반면에 보험 은유는 i) 세금은 진실로 보험료 지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ii) 실제 보험시장이 세금의 수준과 구조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지시하는 바가 많다. iii) 그것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개인적인 이해타산과 책임성이라는 오오라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기 때문이다. iv) 보험은유는 재분배적 정치 프로그램을 은총의 하사로서 주어진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권리로서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한다. v) 재분배적 프로그램이 재정적인 규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공동체에 확신시킨다. vi) 공동체 전체로 보아 경제적인 합리성을 약속한다. 보험의 상이한 수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보험체계는 그들의 부 중 얼마가 위험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51 그러나 은유가 사기적인지 않은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상적 보험 상황 (비슷한 재력, 건강한 개인)은 ≠ 현실의 사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환경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52 i) 보험가입이 강제적이다. ii) 부와 취약성 정도에서 실제로 불평등하다. 이미 불운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ex) 선천적 장애

53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은유는 오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 은유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추구하는 것은 재분배적 세금의 설득력 있는 구조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 유비는 과세가 왜 시민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데 본질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그 이유로부터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7절 가상적 보험

54 일부 사람들이 보험을 보장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지위에 있게 되는 주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① 보험 살 돈이 적다. ②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불운에 빠질 어떤 확률이 더 높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인 사람은 심근 경색을 앓을 확률이 더 높아서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물리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③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보험을 구입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재능 없이 태어난 사람들,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는 이들 사전적 불평등들은 사후적 평등의 비자유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전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교정할 수 있다.

55 우리는 만약 공동체의 부가 평등하게 나뉘어진 상태라면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의 여러 보험을 보장받았을가를 질문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정치 공동체에서 재분배적인 세금의 최적율을 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한 가상적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사고, 질병, 실업, 낮은 임금에 대비한 보험을 어느 수준에서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된 수준에 모자라는 정도로 우리는 공동체가 보험을 제공할 때 사전적 평등이 그만큼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6 이 경우 불평등을 교정하는 세금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준의 보험을 구입했을 때 총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58 보험은 비쌀 것이므로, 구매자는 보험료의 비용을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비를 실제 소득에 따라 내기로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보험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누진적 보험료. 따라서 단순 비례세는 사전적 평등에 위배된다.

59 세금 재원에서 소비세 비율을 올릴 때는 전체 세금 규모가 유지되고, 세율이 가상적 보험상황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곡선이 유지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인두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내는 세제는 정당성이 없다.

8절 정당성과 반대 논변

61 결론: 「세금은, 성찰적인 사람들이 사전적 평등 상황에 있을 때, 그들 자신을 위해 보장했을 보험의 최소한은 적어도 제공해야 공정하다.」

경제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다소간 복잡한 가상적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의 현재 세금 정책이 그러한 검증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ex) 아주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심하게 아플 때에도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의 가정은 가장 검약한 정도의 주택이나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한다.

62 요약: ① 평등한 배려는 정부가 시민들 사이에- 사전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요구한다. ② 가상적 보험 검증은 무엇이 사전적 평등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다. ③ 현재 우리 사회의 재정정책은 그러한 검증을 거친 평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논변에 답하여, 모두에 대한 평등한 배려에 관한 나의 것과는 다른, 그러나 설득력 있는 관념을 반영하는 공정한 세금을 설정하는 다른 구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63 번영

주장1: 낮은 세율은 경제 전반에 좋다.

경험적 비판1: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부정하는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ex) 클린턴 시절보다 부자가 내는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 나빠졌다. 규범적 비판: 그 경험적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번영의 추구는 평등한 배려의 추구가 아니다. 침실 총면적을 극대화하려는 가족을 생각해 보라. 정당성은 사람들에게 대한 평등한 배려의 문제이지, 어떤 추상적인 통계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Legitimacy is a matter of equal concern for people, not concern for some abstract statistic.

64 주장2: 증가된 전반적인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고위층의 부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로 ‘흘러내려서’ 장기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다.

경험적 비판1: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당한 정도로 국가적 번영의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지위는 개선되지 않았다.

경험적 비판2: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축이 중간계급에게만이라도 혜택을 주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명백히도 아무 혜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금 감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장기’란 매우 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지적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없을 것이다.

65 사회안전망

사전적 평등 자체에 반대하며 보험체계를 거부하는 논변: 평등한 배려는 사전적 평등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즉 실제 평등에 대한 어떠한 척도나 형태를 보장함이 없이,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삶decent life을 보장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이 반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66 자유주의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평등이 적절한 정치적 목표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그들은 우리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이상의 목적, 모든 사람의 삶의 수준이 같아져야 한다는 목적은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사후적 평등이 i) 극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더하여 ii) 불공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대비는 보험장치를 통해 구현되는 사전적 평등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비를 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왜 가상적 보험체계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망이 보다 수용할만 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변이 있어야만 한다. 보험장치가 곧 안전망이다: 그것은 하하선을 설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에 따른 안전망이다. 그것은 평등한 배려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정당성 있는 해석을 옹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설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변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낮은 수준일지 높은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경제학적 계산방법이 아니라 자율성 기준이라는 cross check를 할 수는 있겠다. 재능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감지되기 힘들고, 대부분 노력이라는 의지적 요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단순한 재분배의 상당부분은, 그러한 의지적 요소와 자기 선택을 무시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보험이론은 이를 사전적 평등이라는 이념을 통해 개인적 책무의 원리와 조화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가? 과연 평균적인 사람이 재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의 보전이라는 보험상품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계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초가 성립되어 있는가? 질병이나 사고, 실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체계 내에서 평균 소득자의 건강한 사람의 선택을 관찰함으로써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에 재능의 결여라는 보험사건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알아내기 힘들다.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질병과 사고, 장기적 실업의 위험을 맞바꾸어서 어떤 조그만 이익을 더 얻고자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작은 경제적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선택-역보험-은 종종 한다. 주식 투자, 각종 투기 행위, 복권 등등. 가상적 보험 상황에서 재능의 결여에 대한 보험을 구입하려는 정도와, 재능의 충만에 거는 복권을 구입하려는 정도가 상충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장애와 재능은 동일한 유비로서 같은 차원에 놓을 수 없다. 장애는 대부분 의지와 투자의 결과와 무관하나, 재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cross check의 기준은 '자율성'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 미숙련 노동만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재분배를 위한 재분배'를 추천하는 보험을 구입해야하는 도덕적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평등한 배려는 이 경우에,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의 실행에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즉, i) 획일화된 기준과 최소한 딱지labelling에 의해 직무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ii) 사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의 평생교육(직무훈련 포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해도 위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를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25세에 치르는 테스트를 통해서 귀족과 평민, 노예를 가르치는 시험이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라) 결국 cross check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등한 배려나 보험장치가 추천하는 바는, (실업보험을 논외로 한다면) 재능이 많은 자로부터 재능이 적은 자를 고정시켜 놓고 일반적인 소득의 형태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책무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회구조를 만드는 것에 공동체의 자원을 쓰는 정책이다. 그리고 특정한 제도나 교육자원배분 방식이 이러한 기회구조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평등한 배려 원칙이 추천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그 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살아남은 날들의 기회가 좁아진 사람들의 삶을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7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다.

보험체계가 정당화하는 만큼 부자로부터 돈을 걷게 되면 결국은 평등하게 비참한 상태로 모두를 끌어내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비판: 이는 그들이 사전적 평등과 보험장치를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후적 평등은 정말로 공동체를 파산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가상적인 보험장치는 그것이 정당화하는 평등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69 보험장치는 평등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비극이나 좌절을 대비하여 얼마나 보험에 투자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계속 살아가게 될 삶이 비참할 정도로 보험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단지, 그 정도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최소한의 세금 하한선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돈을 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70 자유

만일 세금이 계속해서 감축된다면, 연방정부는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에 쓸 돈이 적어질 것이다: 환경보호, 작업장에서 안전 프로그램, 소득 보조, 노인의료보험제도, 저소득자 신체